

#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2. 5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권태중 기후대기과장)

### 가. 개정사유

○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개정(2024.10.22. 개정 및 시행)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,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·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사업자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○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

○ 상위법령에 맞게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3항)

○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중 포항시의원을 추가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제2호가목)

○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(안 제11조)

○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0조)

## 다. 관련법령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, 탄소중립·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포항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
- 본 개정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녹색경영 노력과 포항시 탄소중립 시책 협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ESG 가치확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
- 개정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「같은 법」 제22조 ‘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‘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의 구성,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전기·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보임.
- 또한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79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2조에 따른 ‘탄소중립이행책임관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.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